

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2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2월 29일

3. 제안이유

가. 지방세법시행령의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0~50%에서 3%로 개정되고

나. 지방재정법(법률제6113호,2000.1.12) 및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6694호,2000.1.12)의 개정으로 도세의 27%(인구 50만이상 시 47%) 해당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

다. 법에서 위임된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,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27% (인구 50만이상 시 47%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.

나.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재정보전금 총액중 일반재정보전금은 90%, 시책추진보전금은 10%에 해당액을 재원으로 함.

- 다.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60%, 정수실적에 따라 40%를 각각 분기별로 배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등 시책추진을 지원토록 함.
- 라.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,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안을 검토한 바

현행의 징수교부금의 차등교부(50만 이상의 시에는 50%, 시·군에는 30%)에 따른 시·군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%로 하고, 도세의 27%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 시·군을 지원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

법에서 위임된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,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설정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대상인 시군 지역개발사업등 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(안)